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42024
등록일자	2015. 12. 7.
결재일자	2015. 12. 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희망복지지원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문화국장		
이정진	옥미정	김구연	전결 12/07 김효길		
협조자					

-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-



## 사회취약계층 단전, 단수, 단가스 등 관리 계획

### 추진근거

-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(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)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12조

### 기간 : 연중 계속

### 조사대상

- 단전·단수·단가스 가구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대상자

### 관리대상

- 조사 가구 중 저소득 위기가구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

### 관리 및 지원방안

- 행복e음 등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관리
- 긴급복지, 맞춤형복지 등 공적지원과 민간서비스 연계
- 위기가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

2015. 12. .

강 남 구  
(복 지 정 책 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12조</p>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p>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</p>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비예산</p>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p>사회취약계층 위기가구</p>
분야 별 검토사항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p>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)</p> <p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</p> <p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</p> <p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</p> <p>⑤ 시장조사 ----- ( )</p> <p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</p> <p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✓ )</p> <p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</p> <p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</p> <p>[계속 : ]</p> <p>[신규 : ✓ ]</p>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p>해당없음</p>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p>해당없음</p>

# 사회취약계층 단전, 단수, 단가스 등 관리 계획

행복e음 등 사회정보시스템으로 “단전·단수·단가스 등” 으로 통지된 가구의 위기 상황 여부를 조사,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I 추진근거 및 배경

### 추진근거

-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(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)

### 추진배경

- “송과 세 모녀” 등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체계 마련 필요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단전·단수 등 가구의 위기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 확보·이용근거 신설(‘15.5.18법 개정, 11.19시행, 법 제12조)
  - 선제적 발굴을 위한 연계대상 정보 확정(대통령령 제정)

## II 추진 개요

### 기간 : 연중 계속

### 조사대상

- 단전·단수·단가스 가구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대상자

### 관리대상

- 조사 가구 중 저소득 위기가구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

### 관리 및 지원방안

- 행복e음 등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관리
- 긴급복지, 맞춤형복지 등 공적지원과 민간서비스 연계
- 위기가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

### 추진방법

동 주민센터	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선 방문대상 가구명단 작성 및 상담 계획 수립</li> <li>- 동 복지협의체, 복지통·반장 등 인적 안전망을 동원하여 생활요금 체납자 발견시 동주민센터 신고체계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긴급복지, 맞춤형복지 등 공적복지 신속 지원</li> <li>- 복지서비스 제도 홍보</li> <li>- 위기가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</li> </ul>

## III 세부 추진 계획

### 1 사회취약계층 선제적 발굴(단전, 단수, 단가스 등 제공 정보)

#### 행복e음 제공자 : 조치결과 행복e음에 등록

행복e음 ⇒ 상담신청 ⇒ 신청관리 ⇒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⇒ 사회취약계층대상자 조회(붙임1 참조)

#### 기관 개별 통보자(행복e음 미등록자) : 엑셀파일로 별도 관리

#### 인적 안전망 활용

- 단전, 단수, 단가스 통지서가 게첨된 가구 발견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
- 동 복지협의체, 복지통반장을 통한 지역사회의 위기가정 발굴
- 기타 동 직능단체, 봉사단체, 종교시설, 복지관 등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이 있는 단체 및 시설 활용

## ■ 근거 법령

###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(이하 "사회보장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「전기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단전(전류제한을 포함한다), 「수도법」 제39조에 따른 단수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정보(가구정보는 주민등록 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

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

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
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

6.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## 3 사회보장 지원

■ 긴급지원,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유도

■ 집중 관리 필요 가구는 민간 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우선 선정·지원

○ 강남복지재단을 통한 위기가정 지원

○ 동 복지협의체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

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희망복지지원팀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리

## 2 행정 사항

■ 희망복지지원팀 :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가구에 대하여 동에서 정기적인 보고 및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

■ 동 주민센터 : 행복e음, 기관 등을 통하여 통지된 가구에 대하여 조사 철저

## V 기대 효과

■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

붙임 1. 사회취약계층 행복e음 시스템 처리 매뉴얼

2. 사회취약계층 관리 명부 서식

## 2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 조사

■ 단전 및 체납가구 정보는 해당주택에 대한 지번 정보로써 현장방문을 통해 실거주자 파악 우선

■ 실거주자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여 가구의 문제점 파악

※ 단, 동일번지 내 다가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번일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 단전가구 확인,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 등은 주계약자와 연락하여 호수 및 실거주자 파악